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상담실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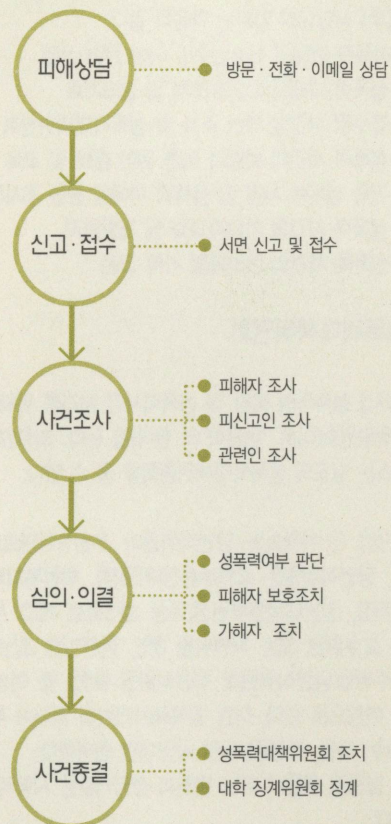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사건처리도

비공식절차: 성폭력상담실 처리



공식절차: 성폭력대책위원회 처리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학생회관 206호

Tel. 02-2123-2118

e-mail : helper@yonsei.ac.kr

homepage : www.yonsei.ac.kr/~helper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 학교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실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교육 및 재발방지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학부총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일반대학원부원장(이상 4인)으로 하고 추천직위원은 교수위원 3인,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한다. 교수위원(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시 추천직위원(교수, 직원, 학생)은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회 아닌 위원회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을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